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
장 성 군 의 회 의



1. 조례명 :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장성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군 보훈수당이 타 시·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앙양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범위 인상(안 제4조)
 - 참전명예수당 : 매월 70,000원 지급을 매월 140,000으로 한다.
 - 유족수당(배우자에 한함) : 매월 50,000원 지급을 매월 100,000원 으로 한다.

4. 예고기간

O 예고기간: 2022. 8. 31.~9.6.

O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의회자료실-조례안예고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O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호 중 "70,000원"을 "140,000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50,000 원"을 "100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범위) 장성군수(이하"군	제4조(지원범위)
수"라 한다)는 참전유공자 등에게	
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	
원할 수 있다.	
1. 참전명예수당 : 매월 <u>70,000원</u>	1 <u>140,000원</u>
지급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유족수당(배우자에 한함) : 매월	3
<u>50,000원</u> 지급	<u>100,000원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